심사보고서
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의안번호	제28호
심사일자	2026. 10. 15.

위원장 전 정 (인)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

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 (우편번호 05584) / Tel : (02)2147-3600 / Fax : (02)2147-3956

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8

2026년 10월 15일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. 10. 2. 전정, 조용근, 이혜숙, 김성호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6. 10. 7.

다. 상정일자: 2026. 10. 15. 제33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

2. 제안설명 요지 (전정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여 송파구 전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지역 상권을 연계하고,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·마케팅 등 지역 관광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.

○ 지역별 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와 함께 관광특구진흥계획 및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, 관광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정비하여 관광정책의 전문성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○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, 관광안내소 운영, 민·관 협력체계 구축, 관광특구 활성화 및 관광정책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및 기본사항(안 제1조~제4조)

○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(안 제5조~제6조)

○ 관광진흥 사무의 위탁(안 제7조)

○ 관광안내소의 설치·운영(안 제8조)

○ 민·관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
○ 잠실관광특구 및 진흥계획(안 제10조~제11조)

○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(안 제12조)

○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의 사용 및 세부기준(안 제13조)

○ 관광정책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(안 제14조~제17조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, 제70조, 제71조, 제74조 및 제76조
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60조의3

○ 합　　의: 관계부서 합의 완료(관광진흥과)

○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손지훈)

○ **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**은 2026년 10월 2일 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, 조용근, 이혜숙, 김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, 의안번호 제28호로 접수,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○ **본 전부개정조례안**은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여 송파구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지역상권을 연계하고,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·마케팅 등 지역 관광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임. 또한 잠실관광특구의 진흥계획 및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, 관광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정비

하여 관광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과 함께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,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, 관광안내소 설치·운영, 민·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**주요 내용**

- **안 제1조**부터 **제4조**까지는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,
- **안 제5조**는 관광자원의 발굴·개발 및 연계, 관광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, 관광 홍보 및 마케팅,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안내 등을 관광진흥사업으로 규정하고,
- **안 제6조**는 「관광진흥법」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가 관광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
- **안 제9조**는 관광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·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,
- **안 제10조**에서는 「관광진흥법」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송파구 관광특구의 명칭을 '잠실관광특구'로 하고,
- **안 제11조**에서 「관광진흥법」 제71조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,
- **안 제12조**는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,
- **안 제13조**는 「관광진흥법」 제74조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를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**안 제14조**부터 **제17조**까지는 관광정책위원회의 설치·기능, 구성,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본 **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**은 송파구의 관광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

마련하고, 관광자원과 지역상권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적정하게 작성·제출된 안건임을 **검토 보고**드림.

4. 질의 및 답변(요지)

【질의】 유미현 위원

○ 관광특구 지정 또는 확대가 지역상권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?

【답변】 전정 의원

○ 관광특구 지정 자체만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움. 관광객의 이동 동선과 소비를 지역상권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,

【질의】 김서윤 위원

○ 전부개정의 취지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 요구

【답변】 전정 의원

○ 기존 조례는 변화하는 관광환경과 관광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부개정으로 추진하였으며, 관광진흥사업, 관광안내소, 관광특구 활성화, 관광정책위원회 등 관광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음.

【질의】 박지효 위원

○ 현행 조례에서 기금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데, 이에 대한 설명 요구

【답변】 박미정 관광진흥과장

○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」 제26조의4에서 관광진흥기금의 조성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삭제함.

【질의】 정성일 위원

○ 잠실관광특구에 풍납시장이 제외되었는데, 소외받는 지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 방안은?

【답변】 박미정 관광진흥과장

○ 당초에 잠실관광특구에 풍납시장을 포함하여 신청하였으나,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관련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쉽게 제외되었음. 경제진흥과와 함께 지역별 상권 활성화 및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하여 노력해 나가겠음.

【건의사항】 조용근 위원

○ 송파구청에서 추진하는 송파구의 관광진흥사업이 잠실관광특구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위례호수공원, 위례트램 등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 계획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함.

【답변】 박미정 관광진흥과장

○ 특정 지역에 치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겠음.

5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